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3711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2. B
3. C
4.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난영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95,315원 및 그중 235,837,97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8. 1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C이 2017. 12. 15. 김포시 E 답 3,750㎡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37,095,315원 및 그중 235,837,97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8. 1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95,315원 및 그중 235,837,97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 제2항 및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C과 공동하여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금원 중 75,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6. 19.부터 2011. 6. 24.까지 피고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 A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F은행에 제출하여 F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1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 100,000,000원 × 3회)을 대출받았고,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대출금의 원금은 합계 229,500,000원(= 76,500,000원 × 3회)으로 변경되었다.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2009. 6. 19.	100,000,000원 (2016. 6. 9. 76,500,000원으로 변경)	2010. 6. 18. (최종 2018. 6. 8.로 변경)
2010. 6. 18.	95,000,000원 (2016. 6. 9. 76,500,000원으로 변경)	2011. 6. 17. (최종 2018. 6. 8.로 변경)
2011. 6. 24.	90,000,000원 (2016. 6. 9. 76,500,000원으로 변경)	2012. 6. 22. (최종 2018. 6. 8.로 변경)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피고 A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받은 대출금에 관한 기간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B이 피고 A의 구상금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구상보증의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피고 A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7. 12.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4. 27. F은행에 대출금 및 이자 합계 235,837,97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으로 2018. 1. 2.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합계 1,257,344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237,095,315원(= 235,837,971원 + 1,257,344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35,837,971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은 2017. 12. 15.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 C에게 그 소유인 김포시 E 답 3,7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33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구상금 합계 237,095,31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35,837,971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할 것을 구한다.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채권최고액 75,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다만,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으로써 2019. 6. 1.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9. 6. 19.부터 2011. 6. 24.까지 피고 A에게 총 3회에 걸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이 구상보증의 약정을 한 사실, 이후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구상금 채권

피고 A는 F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7. 12.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F은행은 2017. 1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신용보증부실통

지(갑 제4호증)를 하였다. 원고는 2018. 4. 27.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235,837,971원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2018. 1. 2.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합계 1,257,344원을 지출하였다[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출한 금액의 합계 237,095,315원(= 235,837,971원 + 1,257,344원)].

2)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처분 등

가) 피고 B은 2017. 12. 15. 이 사건 토지(2014. 6. 19. 거래가액 294,840,000원에 취득함)와 김포시 H 답 2,530m²(이하 'H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19. 6. 13. 기준 577,500,000원이고, H 토지의 시가는 2019. 7. 2. 기준 358,100,000원이다[위 각 토지의 시가 합계 935,600,000원(= 577,500,000원 + 358,100,000원)].

나) 피고 B이 2017. 12. 15. 기준 부담하던 채무의 내역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채무액 합계 1,241,076,322원).

채권자	채무액 (원)	담보 등 내역	비 고
원 고	235,837,971 ¹⁾		피고 A에 대한 구상보증
I조합	230,918,972	이 사건 토지(근저당권)	
J	30,840,000	이 사건 토지(근저당권)	
K회사	221,777,379	H 토지(근저당권)	
L은행	130,000,000	H 토지(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M조합	55,000,000	H 토지(가압류)	
기업은행	251,702,000	H 토지(가압류)	
경기신용보증재단	85,000,000	H 토지(가압류)	
합 계 (원)	1,241,076,322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다) 피고 B은 2017. 12. 15.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체결한 다음, 2017. 12.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2014. 6. 19.부터 설정되어 있던 I조합(이하 N의 표시는 모두 'O'이라 약칭한다)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99,000,000원)과 2016. 8. 25.부터 설정되어 있던 J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은 2017. 12. 19. 및 2017. 12. 2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8. 1. 12. 접수 제26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5,330,000원)를 마쳐주었다(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3) 피고 B, C의 거래관계

가) 피고 B, C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2014. 3. 11.부터 2017. 4. 28.까지 피고 C이 피고 B(피고 A)에게 송금한 금원은 합계 260,000,000원이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 B(피고 A)가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은 합계 156,400,000원이었다. 피고 B은 2017. 4. 18. '피고 C으로부터 85,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구성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았다.

구성항목	금 액 (원)	지급기일	지급방법
계약금	85,000,000	2017. 12. 15.	2017. 4. 18.자 차용증으로 지급에 갈음함
잔 금	265,000,000	2017. 12. 18.	① I조합의 근저당권(230,000,000원)을 피고 C이 승계함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채무는 2017. 12. 15. 기준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극재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② J의 근저당권(30,840,000원)을 피고 C이 2017. 12. 15. 변제함
합 계 (원)	350,000,000		

다) 피고 C은 2017. 12. 26. P조합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O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76,000,000원)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같은 날 I조합에 피고 B의 채무 합계 230,918,972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 C, D의 거래관계

가) 피고 C은 2017. 8. 8. '피고 D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D은 C에게, 2015. 4. 24. 10,000,000원을, 2015. 12. 21.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위 금원의 합계 30,000,000원(= 10,000,000원 + 20,000,000원)].

나) 피고 D은 2017. 12. 15.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의 채권자 J에게 30,840,000원을 보냈고, 피고 C에게,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의 등기비용으로 13,500,000원을, 2017. 12. 26.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990,000원을 보냈다[위 금원의 합계 75,330,000원(= 30,000,000원 + 30,840,000원 + 13,500,000원 + 990,000원)].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B의 구상보증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 A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소극재산이 1,241,076,322원으로 적극재산 935,6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

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 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 C의 관계, 피고 B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와 차용증의 존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기존의 차용금으로 대체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I조합의 근저당권을 P조합의 근저당권으로 교체함으로써 실제 지급한 금원은 J의 채권 30,840,000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에서 실제 지급된 금원의 존재와 액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찾을 수 없고, 매매대금 구성항목의 합계액이 350,000,000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불과 3일 만에 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시점에 피고 C이 승계하기로 했던 I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출한 대위변제금 등 합계 237,095,31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35,837,9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18. 8. 12.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7. 25.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부분은 위 채권의 범위²⁾를 초과한 315,741,028원(= 추인되는 시가 577,500,000원 - I조합의 근저당권 230,918,972원 - J의 근저당권 30,840,000원)이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 639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조합과 J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전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2) 대위변제금 등 합계 237,095,315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235,837,971원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8. 8. 12.까지 연 10%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6,978,219원(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8. 8.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28,300,556원, 2019. 6. 1.부터 2019. 7. 25.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4,264,467원을 합산하면, 276,638,557원(= 237,095,315원 + 6,978,219원 + 4,264,467원)이 된다.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1)항에 기재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득자인 피고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 D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피고 C의 선의 주장에서 본 법리를 더하여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D 사이의 관계를 추측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 D이 수익자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의 자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채권의 합계액이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과 일치하는 점, ④ 채권이 발생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거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옥

판사 김준영

판사 강영선